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465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한
가액배상청구등]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B단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윤창민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 C은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629,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단체에게 4,485,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041,451원, 원고 B단체에게 6,407,4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1.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망 E 사이에 2019.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9,779,556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과 망 E 사이에 2019.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69,334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1)
3.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C은 7,216,580원, 피고 D은 10,824,8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B단체에게, 피고 C은 2,562,976원, 피고 D은 3,844,4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단체(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9. 3. 20. 09:00경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군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H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다. E은 당시 사거리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J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버스가 논두렁 아래로 추락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버스의 앞 부분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버스의 수리비, 견인비, 대차료 등 합계 18,041,451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조합은 병원 치료를 받은 승객 12명에게 2019. 5. 8.부터 2020. 8. 30.까지 치료비 합계 2,719,440원 및 합의금 합계 3,688,000원 등 총 6,407,44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마. E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6.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9. 7. 3. 피고 C(아들)에게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딸)에게 6/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E이 2020. 5. 31. 사망하였고,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처 K, 자녀들인 피고들, L, M, N이 있었다. K, 피고 D 및 L, M, N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느단8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8. 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느단11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9. 2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에 거시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교차로상의 적색점멸 신호 상태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이 사건 버스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망 E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C은 한정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이 입은 물적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 조합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쌍방 차량의 충격 부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한 J 또한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이 사건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J의 과실 또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 차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망 E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C은 한정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이 입은 물적 손해 12,629,015원(= 18,041,451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분이 E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6.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 조합에게 구상금 4,485,208원(= 6,407,44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제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8. 31.부터 각각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조합은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장 부분이 E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공제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공제금 지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송 도중에도 공제금이 추가로 수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상 최종 공제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의 책임을 제한한 범위 내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E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2019. 6. 27.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취지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C에 대한 증여 부분은 9,779,556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에 대한 증여 부분은 14,669,334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9. 7. 3. 피고 C(아들)에게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딸)에게 6/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 A의 E에 대한 채권 12,629,015원 상당액은 피보전채권이 되고, 한편 원고 조합의 E에 대한 채권은 아직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원고 조합은 공제계약의 주체로서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 조합의 구상금 채권 4,485,208원 또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 E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갑 제9호증의 3 중 18면 이하 감정평가서 참조. 2019. 3. 28.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고,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6. 17.에도 비슷한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순번	종류	재산의 표시	가액
1	토지	경남 창원군 O (이 사건 부동산)	48,300,000원
2	단층 농가창고	경남 창원군 O 지상 (이 사건 부동산)	11,232,540원

3	나무(매실, 감)	경남 창녕군 O 지상 (이 사건 부동산)	600,000원
4	토지	경남 창녕군 P	45,030,000원
5	2층 건물	경남 창녕군 P 지상	66,203,520원
6	다용도실	경남 창녕군 P 지상	886,500원
7	나무(매실, 감, 대추, 엄, 사철)	경남 창녕군 P 지상	1,500,000원
합계 173,752,560원			

[소극재산]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액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액과 같다.

순번	채권자	채무내용		금액	비고
1	창녕군	지방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370원	갑 10-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갑10-1 갑10-3
2	Q조합	일반대출금	원금 12,900,000원 이자 338,774원	13,238,774원	갑10-2
		농촌주택대출금	원금 31,286,960원 이자 507,448원	31,794,408원	
3	포항세무서	법인세	35,710,310원	40,013,120원	갑9-3
		부가가치세	4,302,810원		
4	포항시 남구청	지방소득세	136,520원	1,961,800원	갑9-3
		주민세	33,990원		
		지방소득세	78,900원		
		지방소득세	1,712,390원		
5	마산세무서	양도소득세		1,207,200원	갑9-3
6	안산시 단원구청	지방소득세	709,500원	5,809,990원	갑9-3
		주민세	23,170원		
		지방소득세	3,820원		
		지방소득세	211,640원		
		지방소득세	1,710원		
		지방소득세	1,562,730원		
		지방소득세	3,297,430원		
7	원고 A	손해배상 채무		12,629,015원	
8	원고 조합	구상금 채무		4,485,208원	
합계 112,465,885원					

살피건대, 앞서 본 적극재산 합계액 173,752,56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60,132,540원(적극재산 표 순번 1 내지 3의 합계액)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113,620,020원(= 173,752,560원 - 60,132,540원)이 산정되어 소극재산 합계액인 112,465,885원을 초과하므로(더구나 위 소극재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시점에는 위 금액보다 더 감축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증여계약 자체로서 채무자 E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 E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E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E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법리는 적용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별지

목 록

1. 경남 창원군 O 창고용지 460㎡
2. 위 지상 경량철파이프조 스테트지붕 단층 농가창고 170.19㎡. 끝.

1)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24,448,891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청구취지 제3, 4항 기재 금원들을 모두 합하면 24,448,890원이므로, 위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이 피고들 지분별 금액을 나누어 기재한다.

2) ① 원고 A 청구액: 피고 C 7,216,580원(원고 주장 채권액 18,041,451원 x 피고 C 지분비율 4/10), 피고 D 10,824,870원(원고 주장 채권액 18,041,451원 x 피고 D 지분비율 6/10)

② 원고 조합 청구액: 피고 C 2,562,976원(원고 주장 채권액 6,407,440원 x 지분비율 4/10), 피고 D 3,844,464원(원고 주장 채권액 6,407,440원 x 지분비율 6/10)